

예 산 총 칙

2017년도 추경 2 회

제 1 조 2017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1,068,340,117	32,050,204
일반회계	907,862,111	27,235,863
특별회계	160,478,006	4,814,340
공기업특별회계	124,376,073	3,731,282
상수도공기업특별회계	55,601,990	1,668,060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68,774,083	2,063,222
기타특별회계	36,101,933	1,083,058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4,897,578	146,927
수질개선특별회계	55,014	1,650
농어촌소득지원특별회계	3,338,305	100,149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대특별회계	125,635	3,769
주택사업특별회계	3,031,151	90,935
농공단지특별회계	4,327,506	129,825
공단조성사업특별회계	60,865	1,826
도시교통사업특별회계	3,641,446	109,243
기반시설부담금특별회계	46,962	1,409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3,639,223	109,177
도시개발특별회계	8,488,949	254,668
폐기물처리시설사업특별회계	4,449,299	133,479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별첨 "세입·세출예산"과 같다.

제 3 조 2017년도 지방채 발행 한도액은 18,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4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7,469,122천원으로 한다.

제 5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기준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사업 간의 경비, 재해대책 및 복구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

제 6 조 최종 추경예산 확정 후 보조사업의 추가 내시가 있는 경우 시의회의 협의를 얻어 간주처리할 수 있다.